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7

발의연월일: 2020. 6. 19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임종성 · 서삼석

박 정・유동수・안호영

민병덕 • 박용진 • 박찬대

정춘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 벌 시장을 대상으로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 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청년들의 해외진출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과 실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등의 권한 및 철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경력증명서 증명·발급·관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구축·운영하고 있는 "해외통합전산망"의 운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·제6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7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구축"을 "인력수급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지원 및 현지 정보제공"을 "등 진출 지원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"를 "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- 5. 고용노동부장관은 해외고용시장 정보(일자리 및 생활정보 등을 말한다)의 제공과 해외진출 또는 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・활용할 수 있고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들의 경력개발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해외통합전산망을 구축・운영하여야한다.
-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.
- 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사실관계에

입각하여 청년들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본인 이 원할 경우 증명서로 발급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 	개 정 안
제12조(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	제12조(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
협력체계) ① 정부는 국제적	협력체계) ①
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	
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	
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,	
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	
양성사업(이하 "글로벌인재 양	
성사업"이라 한다)을 하여야	
한다.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각	
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	
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
1.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	1
하여 다음 각 목의 자 등과	
연계한 <u>인력수급 및 취업정보</u>	<u>인력수급</u>
전산망 구축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	3
하는 청년의 비자 발급 <u>지원</u>	<u>등 진</u>
및 현지 정보 제공	<u>출 지원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고용노동부장관은 해외고용
	시장 정보(일자리 및 생활정

② • ③ (생 략)

① 정부는 <u>제1항제1호 각 목의</u>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보 등을 말한다)의 제공과 해외진출 또는 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·활용할 수 있고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청년들의 경력개발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해외통합전산망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 ④ ----- 제1항 각 호의 사업

 에 소요되는

⑤ 제1항제5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.
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청년들의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하고 이를 본인이 원할 경우증명서로 발급하여 제공할 수